

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제 1 조 (목적) <개정 2026.7.30.>

이 규정은 삼성SDI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칭함)가 관계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권한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01.1.16.>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 9 인 이하로 구성한다.
단, 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. <개정 2026.7.30.>

제 2 조의 2 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<개정 2015.3.13.>

제 3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,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01.1.16.>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.
<신설 2001.1.16.>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01.1.16.>

제 4 조 (해임)

- ①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<개정 2001.1.16.>
- ② 이사회는 위원의 해임, 사임, 임기만료 또는 기타 그 직을 계속할 수 없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결원된 위원을 선임하여 충원해야 한다.
- ③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 중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해당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, 의무가 있다. <신설 2001.1.16.>

제 5 조 (회의의 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01.1.16.>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모사전송방식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,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1. 1. 16.>

제 6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<개정 2001. 1. 16.>
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 3. 26.>

제 7 조 (권한) <개정 2026.7.30.>

위원회는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
제 8 조 (의사록)

위원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과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1. 16.>

제 9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을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.16.>

제 10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3.26.>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 <개정 2001. 1. 16.>

제 11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·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 12 조 (기타)

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01.1.16.>

부 칙

이 규정은 2000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 년 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 6 조(결의방법)는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 년 7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, 제 2 조 제 2 항, 제 7 조 개정 규정은
2026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

서기 2000 년 3 월 16 일 제정

서기 2001 년 1 월 16 일 개정

서기 2012 년 3 월 26 일 개정

서기 2014 년 7 월 2 일 개정

서기 2015 년 3 월 13 일 개정

서기 2015 년 3 월 13 일 개정

서기 2026 년 7 월 30 일 개정